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19가합576156 판결 [주식 매매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3. 3 선고 2021나20239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19가합576156 판결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청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맹주한

변 론 종 결 2021. 4. 1.

판 결 선 고 2021.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관광객이용시설업(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2010. 2. 26.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 3. 31.까지 대표이사로, 2015. 7. 29.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D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1만 주(그 후 주식병합으로 액면가 5,000만 원의 주식 1주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고, 1996. 11. 30. 사망하였다. 원고는 D의 배우자로서 D의 한국 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명의개서의 거절 등

1) 피고는 D로부터 1996.경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1996. 9. 28. E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 E는 위 명의개서를 거절하였고, 원고는 2002. 11. 14. E에게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 원고는 2009. 5. 18. E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1997.경부터 2009.경까지의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9. 12. 18. 위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3954, 2010가합3961, 이하 '제1소송'이라고 한다).

피고는 2009. 7. 21. E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및 주권의 교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5718, 이하 '제2소송'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협약의 체결

피고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C은 2010. 2.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협약조건)

본 협약은 C이 피고의 주주들로부터 피고의 모든 주식을 100% 양수하여 피고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됨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제3조 (권리의 귀속)

원고는 D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생전에 피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음을 승인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피고가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 이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소취하 등)

원고는 본 협약을 체결한 후 C이 피고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즉시 제1소송을 취하한다.

제7조 (대가의 지급)

C은 본 협약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E로부터 피고가 적법한 주주임을 확인받게 되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과, E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임을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배당하기로 E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배당금 중 피고가 수령하게 될 배당금과의 합계액에서, C이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지출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본 협약체결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라.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1) C은 2010. 2. 26. 피고의 발행주식 전부(2만주)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F와 사이에 위 주식 전부를 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일자를 2010. 2. 28.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을 25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의 서명·날인이 있고, C은 피고를 대표하여 서명 및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C은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4. 양수도대금: 25억 원(미지급배당금 포함)

[제2조]

2.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는 시점부터 이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3. 잔금 20억 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제2소송의 주주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주식 대금 회수를 위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4. 제2소송의 주주권 확정 판결 후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20억 원의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대한 이자율은 제2소송의 주주권 확정 판결 후 연 3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마. 제1, 2소송의 결과

원고는 2010. 9. 2. 제1소송에 관한 청구를 포기하였고, 제1소송의 법원은 2010. 9. 16. 'E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인 피고에게 574,507,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2소송의 법원은 2010. 7. 1.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주권을 교부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5.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질권 설정 등

1)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2012. 3.경 G에게 차용금 10억 원(이자 포함)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고, 2012. 3. 12. G로부터 피고

명익의 은행계좌로 607,673,000원을 입금받았다. 2012. 3. 22. E의 주주명부에 G가 이 사건 주식의 질권자로 등록되었고, E는 G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2015. 7. 20.부터 2017. 6. 3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6. 6. 8. G를 상대로 이 사건 질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의 인도 및 기지급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30076, 이하 '제3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3소송 법원은 이 사건 질권 설정이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2. 15.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고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6. 1. 29. C를 상대로 이 사건 질권 설정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제4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4소송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658)은 2020. 9. 10. 이 사건 질권 설정 행위를 C의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C은 피고에게 1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2.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6, 22, 23호증, 을 제1~3, 7, 13~15, 18, 21~24, 27,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을 25억 원으로 정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양수도대금 중 계약금 5억 원 및 잔금 20억 원에 대한 2011. 5. 31.부터 2012.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6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서는 C이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내지 C의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양수도대금 지급채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1)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의 서명·날인이 있고, C이 피고를 대표하여 서명 및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법인인감 등록일(2010. 3. 2.)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2010. 2. 28.) 이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¹⁾ 3) 피고는, C이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유무

1) C이 피고를 대표하여 2010. 2.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1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C이 위 고소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3972호)에서 이 사건 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343)에서 2018. 7. 13. 기각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2018. 12. 21.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11호증, 을 제4, 6, 8, 10, 11, 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C의 대표권남용행위로서 원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와 피고 사이의 1996.경 계약에 관하여

(1) D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1억 5,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이하 '최초 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최초 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최초 계약서에 D의 서명·날인과 피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1996. 9.경 작성된 주식양도증서 및 1996. 5. 20. 일본에서 발급받은 D의 인감등록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1996. 9. 28. 피고로부터 최초 계약서 등 서류를 접수하였다는 취지의 E 총무부장 명의의 접수증이 존재한다. 이 사건 협약 제3조에서 원고는 D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생전에 피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음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D와 피고 사이에 최초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D 사망일 이후인 1997. 1. 31.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D의 양도소득세 3,690만 원에 대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졌고, 그 영수증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바, 피고는 D를 대신하여 D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1996.경 피고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D가 최초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체결일에 한국에 없었다거나 E의 정관에 명의개서의 자격을 재일동포로 한정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분쟁 경과 및 그 간의 물가 상승, 주식의 시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D와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최초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이 1억 5,000만 원이었고, 피고가 최초 계약에 따른 D의 양도소득세도 대신 납부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을 25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나) 이 사건 협약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약 2주 전인 2010. 2. 11. C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체결 목적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가 D로부터 최초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음을 승인하는 대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미지급 배당금의 합계액 중 50%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협약에서 구체적인 양수도대금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협약에서 최초 계약을 승인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을 정하기 위한 별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데, 이 사건 협약 제7조의 양수도대금은 최초 계약에서 정한 1억 5,000만 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배당금은 6억 원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과 미지급 배당금의 합계액 중 50%는 4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2. 28.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을 25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서만 추상적으로 정한 일종의 양해각서에 불과하고, 위 양해각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가가 일응의 기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가가 위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 및 미지급 배당금의 합계액이 5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인데(그 중 50%를 양수도대가로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이를 25억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는 최초 계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금은 물론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세 등에 비추어 보아도 수긍하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관련자들의 진술 등

(1) F이 2010. 2. 26. C에게 양도한 E 발행주식 2만 주와 관련하여 H 등이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1830(본소), 2013가합81847(반소)]에서, C은

2012. 11. 16.경 'C이 원고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을 종식시켰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2013. 5. 29.경 '원고에게 주식양수도대금으로 약 5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원고 간의 분쟁을 종식시킨 후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C과 친분관계가 있어 C으로부터 여러 사건의 소송을 위임받은 I 변호사도 2017. 10. 17.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17노2053)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으로부터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지인인 J는 제4소송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5597)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F에게 피고와 원고 사이의 분쟁을 5억 원의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F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C이 피고와 원고 간의 분쟁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이 C은 관련 소송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5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 관련 분쟁을 해결한 것처럼 말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질권 설정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25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라) 관련 사건의 판결

(1) 제3소송에서 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을 25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양수도대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G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3소송 법원은 이 사건 협약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최종합의로서 달리 잔금 이행의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C이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자 원고에게 사정하여 실제와 다른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C의 위 증언 내용을 믿지 아니하였다.

(2) 제4소송의 항소심 법원도 위 나)의 (1)항 및 다)항 등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마) 기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 중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C이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된 2015. 7. 29.경 이후에는 피고에게 위 양수도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을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숙, 판사 정교형, 판사 공우진

1) 피고는 제4소송의 항소심 법원에서와 달리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였다.